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89호 2022. 7. 28.(목)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2-1071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 사천시 공고 제2022-1079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8
- 사천시 공고 제2022-1084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 사천시 공고 제2022-1086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36

회 람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고시 제2022-1071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정신질환자의 자연휴양림 이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녹지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 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사천시청(참조: 녹지공원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40, FAX: 831-6038)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8. .

제 출 자: 녹지공원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자연휴양림 이용 제한 규정 삭제(안 제9조제2항)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7. 28. ~ 2022. 8. 17.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정신질환이나 감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이용 제한 등) ① (생 략)</p> <p>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p> <p>1. <u>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u>이 있는 경우</p> <p>2. ~ 8.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9조(이용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u>감염성</u> ----- -</p> <p>2. ~ 8.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1079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 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농축산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831-3769, FAX : 831-6051)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농축산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 3. 주요내용

가.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2022년 1회 추경 기 반영 및 2023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7.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붙임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농지위원회 운영비 및 위원심의수당 지급: 82명(안 제3조)

나. 비용추계의 결과

1) 추계의 전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의 본래 기능(농작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 심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심의수당 및 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

2) 추계결과

(단위: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출	운영비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소계(a)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세입	세외수입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의존재원	-	-	-	-	-	-	
	소계(b)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 ※ 산출내역

- 심의수당: 80,000원×82명×월 2회 개최×12개월=157,440천원
- 운영비: 10개소(읍면 8, 분과위원회 2)×500,000원=5,000천원

다. 부대의견: 월 2회 심의회 개최에 대한 심의수당 산정 및 운영비 반영

농 축 산 과 장 송 혜 경 (인)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재원조달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지방세						
	세외수입	76,700	162,440	162,440	162,440	162,440	726,46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매월 경남도에서 지급받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수수료(세외수입)를 재원으로 충당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농 축 산 과 장 송 혜 경 (인)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사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농지법」에 따른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권역(명칭)	관할구역	비 고
사천읍·축동면 농지위원회	사천읍	
	축동면	
정동면 농지위원회	정동면	
사남면 농지위원회	사남면	
용현면 농지위원회	용현면	
곤양면 농지위원회	곤양면	
곤명면 농지위원회	곤명면	
서포면 농지위원회	서포면	
사천시 농지위원회	선구동	1분과위원회
	동서금동	
	별용동	
	향촌동	
	동서동	2분과위원회
	남양동	

## 관 련 법 규

###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2. 5. 1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1084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청사 신축(증축) 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규정 신설 및 1급 관사(시장 관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의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등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장 관사(1급 관사)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2조, 제12조 및 제13조)
- 나. 청사의 설계면적기준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면적 반영(별표 1)
- 다. 관사 사용자의 관사 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 정비(안 제17조)
- 라.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의 정신질환자 입장 제한 삭제(안 제 34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회계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931, FAX : 831-6028)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제 호
----------	------------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회계과장

### 1. 의결주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개정이유

청사 신축(증축) 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확보 규정 신설 및 1급 관사(시장 관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2급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며,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예술공간의 입장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청사 등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시장 관사(1급 관사)에 대한 내용 삭제(안 제2조, 제12조 및 제13조)
- 나. 청사의 설계면적기준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면적 반영(별표 1)
- 다. 관사 사용자의 관사 운영비 부담에 대한 내용 정비(안 제17조)
- 라.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의 정신질환자 입장 제한 삭제(안 제 34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혁신법무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가) 기 간: 2022. 7. . ~ 2022. 8. .(20일 이상)

나) 제출의견: 없음, 건

다) 반영여부: 반영 건, 미반영 건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평가: 반영, 미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시의 본청”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으로, “읍·면·동·사업소·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다)”를 “읍·면·동·사업소·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사”란 시장 및”을 ““관사”란”으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읍·면·동·사업소·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사”를 “읍·면·동·사업소·시의회 청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회청사”를 “시의회 청사”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사천시의회”를 “시의회”로 한다.

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3조 단서 중 “1급·2급”을 “2급”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이하 이 장에서”로,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있으면”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을 “기본적인 비품”으로,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를 “경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공청사”를 “청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사용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용자와”를 “시장과”로 한다.

제34조제1호 중 “한다) 또는 정신질환자”를 “한다)”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적용범위)</u> 이 조례는 시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사업소·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청사 및 관사를 대상으로 한다.</p> <p><u>제3조(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사”란 <u>시의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다)</u>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p> <p>2. “관사”란 시장 및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3.·4. (생략)</p> <p><u>제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u> ① <u>시장</u>은 청사를 신·증축하려면 위치·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p>	<p><u>제3조(적용범위)</u> ----- ----- 읍·면·동·사업소·시의회 청사 ----- -----.</p> <p><u>제2조(정의)</u> ----- ----- 다음과 -----.</p> <p>1. ----- <u>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u> ----- 읍·면·동·사업소·사천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 ----- -----.</p> <p>2. “관사”란 ----- ----- ----- -----.</p> <p>3.·4. (현행과 같음)</p> <p><u>제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u> ①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p>

② (생략)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 및 의회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사 공간의 사용허가) ① ·

② (생략)

③ 청사 공간 중 대회의실(부대시설 포함)의 사용허가는 사천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직원 본인과 그 자녀의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후생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④ (생략)

제1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 3. (생략)

제13조(사용허가) 관사는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청사의 기준 면적) ----- 시의회 청사-----  
-----  
-----  
-----.

제11조(청사 공간의 사용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시의회 -----  
-----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관사의 구분) -----  
-----.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  
-----.  
----- 2급 -----  
-----.

제14조(사용책임) -----  
----(이하 이 장에서 ----- 다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를 반납 받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 1.·2. (생략)
- 3. 보일러 운영비(1급, 2급 관사로 한정한다)
-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운영비 등(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 6. TV시청료, 도시가스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위성 및 케이블방송 시청료(1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각 호의 -----  
-----.

-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예산의 범위-----.

-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기본적인 비품-----  
----- 경비

<삭제>

<삭제>

7.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관리비(1  
급,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제22조(사용허가) ① 공공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해당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제2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문화예술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유무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준은 별표3에 따른다.

② ~ ⑤ (생략)

제30조(관람료) ① (생략)

②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시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4조(입장의 제한)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

<삭 제>

제22조(사용허가) ① 청사 -----  
-----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장  
에서 “사용자” 라 한다)-----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사용자-----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시장과 -----  
-----.

제34조(입장의 제한) -----  
-----  
-----

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6세 이하의 어린이(아동극을 제외 한다) 또는 정신질환자
2. ~ 4. (생략)

제3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공연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 한  
다)
2. ~ 4.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별표 1】**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6조 관련)**

**1. 시 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sup>2</sup>)

기관별 \ 구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국.소장실	부서장실	팀장 (담당)	직원
본청	99	66	45	17.92	7.65	7.2
읍.면.동.사업소 및 직속기관	66	-	45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 이상 시, 면적 0.8m <sup>2</sup> ×사용인원
	4~2.4 m <sup>2</sup> /인	2.6~1.5 m <sup>2</sup> /인	2~1.2 m <sup>2</sup> /인	1.6~1 m <sup>2</sup> /인	1.2~0.9 m <sup>2</sup> /인	
상 황 실		2.64×(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sup>2</sup> /인	0.40m <sup>2</sup> /인	0.33m <sup>2</sup> /인		
	엘리베 이터	(12.87~19.6m <sup>2</sup> )×대수				
식 당		1.63m <sup>2</sup> ×공무원수×0.3				
휴 게 실		2.0m <sup>2</sup> ×공무원수×0.15				
민 원 실		{(6.55m <sup>2</sup> ×민원담당공무원수)×1.1} + {(0.13m <sup>2</sup> ~0.2m <sup>2</sup>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 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sup>2</sup> /인	11.52m <sup>2</sup> /인	8.64m <sup>2</sup> /인			
자 료 실		(0.3~0.4m <sup>2</sup> )×공무원수				
창 고		0.72m <sup>2</sup> /인 ~ 0.85m <sup>2</sup> /인				
전 산 실		9.79m <sup>2</sup> ×담당직원 수×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sup>2</sup> 이상				평시 충무시 설로 이용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1m <sup>2</sup> /인, 최소 6m <sup>2</sup> 이상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sup>2</sup>)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면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sup>2</sup>		800m <sup>2</sup>		1,000m <sup>2</sup>	
	층장비실	6.6m <sup>2</sup>		8.4m <sup>2</sup>		10.2m <sup>2</sup>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이하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유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

2. 시의회 청사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국·소장실, 부서장실 면적 준용	시 위원회 수 : 3개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sup>2</sup>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sup>2</sup>	면적범위 내에서 적당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sup>2</sup>	위원회 수 : 3개
사무국장실	38.88 ~ 64.0m <sup>2</sup>	
사 무 실	직원 수 × 7.2m <sup>2</sup>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 관 련 법 규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89호

사천시 고시 제2022 - 1086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2. 7. 28.

##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2. 7. 28. ~ 2022. 8.11.(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57소1871	QM6	윤정희	2022.7.25	이혼소송 중이며 배우자의 차량운행 차량증지를 요청함.

### 4. 공 고 내 용

-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민원교통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